# CCTV 운영 관리 지침

엑시엄자산운용 주식회사

# CCTV운영 관리 지침

제정 2023. 08. 21.

#### 1. CCTV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CCTV를 설치,운영한다.

- 1)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 2) 범죄 예방 및 수시
- 3) 기타 업무

# 2. 설치대수,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구분	설치대수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본점	2대	출입문, 전산실

#### 3. 관리 책임자 및 관리담당부서 등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CCTV 관리책임자 정· 부를 지정한다.

- 관리담당부서 및 책임자: (정) 준법감시인 (부) 경영관리본부장

####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24시간	촬영일로부터 50일까지	전산실內 CCTV 녹화장치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하지 않으며,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한다.

#### 5.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1) 확인 방법 : 관리책임자에게 사전 연락하고 관리책임자의 입회 하에 확인 가능하다.
- 2) 확인 장소 : 본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4370호(쓰리IFC))

####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1) 정보주체(본인)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CCTV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 2)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주소불 명 등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한다.
- 3) 당사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구를 거부당할 수 있다.
- 가.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나.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ex. 개인영상정보 열람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사생활이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큰 경우)

# 7.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는 분실·도난 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또한 당사는 개인 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 보에 관한 접근 권한을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한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 관을 위하여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 8. CCTV 운영관리지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CCTV 운영·관리방침은 관련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부터 시행한다.